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. 10. 15 선고 2019가단949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10. 15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88. 1. 19. 접수 제115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각 1/5 지분에 관하여 1998. 1. 19.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원고는 청구취지에 말소등기의 원인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, 청구원인을 참작하여 말소등기의 원인을 주문과 같이 특정한다)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변경한 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(원고는 2019. 7. 10.자 보정서에 기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)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판사조유진

별지